특 허 법 원

제 5 - 2 부

판 결

사 건 2022허6075 거절결정(상)

원 고 A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집행임원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변리사 김정식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승민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론종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10. 28. 2021원5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제40-2019-93489호/ 2019. 6. 17.



- 3) 지정상품: [별지 1] 기재와 같다.
- 나. 선등록상표들1)
 - 1) 선등록상표 1 내지 11: [별지 2] 기재와 같다.
 - 2) 선등록상표 12(갑 제6호증의 1)
-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88. 12. 9./ 1990. 10. 16./ 2020. 3. 13./ 서비스표등록 제12463호



- 다) 지정서비스업: [별지 3] 기재와 같다.
- 라) 등록권리자: A씨앤이 주식회사

¹⁾ 선등록서비스표도 편의상 '선등록상표'라 한다.

3) 선등록상표 13(갑 제6호증의 2)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88. 12. 9./ 1990. 10. 16./ 2020. 3. 13./ 서비스표등록 제12464호

나) 표장: **SANGYONG**

- 다) 지정서비스업: [별지 4] 기재와 같다.
- 라) 등록권리자: A씨앤이 주식회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0. 1. 16.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2) 원고는 2020. 3. 16.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 12. 31. '2020. 1. 16.자 거절이유의 일부를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결정한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 3)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특허심판원 2021원574호로 심리한 후 2022. 10. 28.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2, 13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전체가 일체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2, 13(이하 선등록상표 12, 13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이라 한다)을 전체로서 대비하면,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전혀 달라 서로유사한 표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

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참조). 한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상표법 제34조 제2항),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20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표장 유사 여부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

가) 이 사건 출원상표 ' SsangYong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rp. '는 영어 대문자

'S'를 겹쳐 놓고 각각 회색과 붉은색으로 구성한 도형 ' ' '을 왼쪽에 배치하고, 영문자 'F'과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rp.'를 상하 2단으로 결합하여 오른쪽에 배치한 표장이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7 내지 9, 16, 17,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에

서 도형 부분 '\$\int_{\text{'}}' 또는 문자 부분 중 'F'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 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D이 1939년 설립한 E 합자회사를 모태로 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발전하였던 이른바 'A 그룹'의 계열 회사들은 1976년경 무렵부터 한글 'A'이나 영문자 'F'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서비스표들2)을 각 그 지정상품 등을 달리하여 출원·등록받아 왔다. A 그룹의 계열 회사들은 1989년경 무렵부터는 영문자로 표기된 그룹명(F)의 첫 두 글자 'SS'를 딴 도형 ' \$\int\text{S}\text{'}\te
- (2) A 그룹 계열 회사들의 규모와 그 존속기간, 해당 회사들의 광고 내지 영업활동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A', 'F' 및 ' \$\frac{1}{2} (이하 '쟁점 표장들'이라 한다) 표시는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등의 출처표시로서 두드러지게 인식되도록 사용되었던것으로 인정된다.
 - (3)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F' 부분은 쟁점 표장들 중 위 'F'과 영문 자 대소문자의 구성만 달리한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 '\$\sigma_{\text{!}}\cup '은 쟁점

표장들 중 ' 나 색채만을 달리한 것으로서 그 외관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

株式會社雙龍 SSANGYONG CORPORATION, SSANG WS YONG WS SONG WS STANG WS S

다.

- (4)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도형 부분()은 2단으로 결합한 문자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크기로 구성되어 있는 점, 위 도형 부분은 색채와 결합하는 등 일정한 도안화를 거친데 반하여 문자 부분은 평이한 서체의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에서도 'F' 부분은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rp.' 부분에 비하여 그를 구성하는 글자의 수가 적어 비교적 한 눈에 들어오기 쉽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 중위 'F' 부분은 수요자의 이목을 끌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5) 이 사건 출원상표의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rp.' 부분은 사전상 '정보'를 의미하는 'Information'과 '통신'을 의미하는 'Communication', 기업을 의미하는 축약어인 'Corp.'이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기호 '&'와 결합한 것으로서 '정보통신기업'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술용역서비스업' 등과의 관계 및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영어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rp.'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 지정상품의 용도, 성질 등을 직감하게 할 것으로 보여 식별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 (6)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 부분의 결합으로 인해 그 각 구성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합친 것 이상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전체적인 구성과 형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 부분의 개별적인 구성과 다른 구성 부분과의 결합 정도 및 그 지정상품의 종류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 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표장의 유사 여부

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양 표장을 대비해 보면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심결일 당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요부만으로 약칭될 경우에는 위 'F' 부분에 의하여 영어 발음법칙에 따라 "A"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등록상표 12는 위 'SSANGYONG' 부분에 의하여, 선등록상표 13은 위 'SSANGYONG' 부분에 의하여 영어 발음법칙에 따라 모두

"A"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 양 표장은 호칭이 동일하다.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 "A"과 달리 그 문자 부분 전체인 "A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위 'F' 부분의 호칭과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을 모두 위 "A"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양 표장은 호칭이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그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이 모두 "A"으로 동일한 사정과 아울러, 위 "A"은 조어이거나 한자어 A(雙龍)의 의미인 "두 마리의 용" 정도로 관념될 것으로 양 표장의 관념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다) 앞서 살핀 사정들과 함께 문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거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과 원래 상표·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서비스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 등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양 표장은 설령 그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으로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양 표장은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 그룹이 해체되기 전에 A 그룹에 소속된 계열 회사였는데, 이 사건 출

원상표 중 'F' 및 '\$\infty\$' 부분은 연매출이 25조 원에 달하던 A 그룹에 소속되어 있던 다수의 계열 회사들이 함께 사용하던 이른바 '그룹표장'에 해당된다. 그런데 일반 수요 자는 그룹명 또는 심벌마크에 업종 관련 표현이 결합된 표장(그룹표장 + @)을 그룹표장 부분만으로 분리인식하지 않고 표장 전체를 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가 일체로서 인식되어야 하고, 위 'F'이나

' 부분만으로 분리되거나 위 부분을 요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함께, 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되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정도로 거래 사회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전체로서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한 점,②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 이미 종래의 A 그룹과는 경제적·조직적인 관련성이 없는 회사로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F'이나 ' '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등록권리자인 'A씨앤이 주식회사'에 대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 A 그룹과는 경제적·조직적인 관련성이 없는 회사로 인정되는 이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심결일 당시에 이 사건 출원상표를 종래의 A 그룹과 관련된 상호 등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위 'F' 부분 등으로만분리하지 않고 그 업종 등의 표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점, ④ 한편 원고는, '원고가 과거 A 그룹의 그룹표장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므로, A 그룹의 그룹표장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향사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므로, A 그룹의 그룹표장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과거 A 그룹의 그룹표장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등을 향상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에는 "컴퓨터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개발/유지 및 관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개발업, 통신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설계 및 개발업"이 있고,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중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대업"이 있다. 그런데 위 지정상품 등은 모두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 사회의 통념상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지정상품을 그 지정상품의 일부로 하는 상표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그 출원이 거절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판결 등 참조). 결국, 그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2023. 8. 4.자 참고서면과 그에 첨부된 자료들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³⁾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등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는 적절하지 아니한 사안들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별지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주문제작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클라우

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서비스 제공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멀티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관리 플랫폼 소프트웨어, 스포츠 분야의 데이터 수집/관리/저장/분석용 소프트웨어, 재무관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계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업용 컴퓨터소프트웨어, 국방데이터관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업 절차 자동화 및관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 유지관리/운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용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 및 데이터 통합/관리용 컴퓨터소프트웨어, 통신용 소프트웨어,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서버, 컴퓨터 네트워킹 및 데이터 통신 장비, 컴퓨터 네트워크용 허브/스위치 및 라우터, 무선통신기기용무선랜 AP, 컴퓨터통신망연결장비, 보안감시장치, 통신네트워크, 통신장비, 전기통신기기, 컴퓨터,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 전선 및 케이블, 전기제어기기, 음향/데이터 또는 영상의 방송/기록/송신 또는 재생용 장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기록된 데이터파일, 원격제어장치, 전기음향영상기기

- 상품류 구분 제35류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가공편집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수집 및 조직화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업, 컴퓨터화된 기록관리업, 스포츠 경기에서 수집된 전자데이터처리업, 전자데이터처리 상담업, 전자데이터처리업, 전자전송용 정보 가공편집 및 구축업, 정보검색서비스업, 기업프로젝트관리업, 기업용 파일관리업, 기업관리지원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개업, 네트워크서버 중개업, 컴퓨터 네트워킹 및 데이터 통신장비 중개업, 컴퓨터 네트워크용 허브/스위치 및 라우터 중개업, 컴퓨터통신망연결장비중개업, 보안감시장치 중개업, 통신장비 중개업, 전기통신기기 중개업, 컴퓨터 중개업, 전기제어기기 중개업,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 중개업, 사업관리 관련 데이터 및 정보 집

계 및 분석업

- 상품류 구분 제36류의 재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 컴퓨터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재 무정보제공업, 재무정보처리업
- 상품류 구분 제38류의 데이터 전송 및 통신업, 컴퓨터네트워크통신업, 모바일 및 인터넷상의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데이터베이스 및 컴퓨터 네트워크 접속제공업, 글로 벌 컴퓨터정보망 접속제공업, 글로벌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전송 및 배포업, 네트워크 컴퓨터시스템간의 데이터전송업, 메세지전송업, 통신 분야 상담/정보제공 및 자문업, 통신설비 임대업, 전기통신시스템 운영업, 전기통신설비 제공업, 인터넷 대화방및 포럼 제공업,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업, 컴퓨터데이터베이스 접속시간 대여업
-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 또는 글로벌통신네트워크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스포츠경기 관련 정보제공업, 웹사이트를 통한 스포츠정보제공업, 게임경기 분석정보제공업, 스포츠경기 정보제공업, 스포츠경기 및 스포츠행사의 준비 및진행업, 스포츠경기 제공업, 스포츠경기조직에 관한 상담업, 스포츠대회 준비업, 스포츠기록 제공업, 온라인게임대회/기타 게임대회의 기획/운영/개최업, 스포츠행사 조직 및진행업,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세미나/훈련/워크샵/전시회 조직/준비/진행업, 스포츠시설 제공업
- 상품류 구분 제42류의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주문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 및 업데이팅업, 컴퓨터소프트웨어 설치/유지관리 및 수리업, 컴퓨터시스템디자인업, 컴퓨터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개발/유지 및 관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램사용자용 온라인지원서비스 제공업, 컴퓨터프로젝트 관리 서비스업,

클라우드컴퓨팅업, 클라우드컴퓨팅 상담업,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관리 서비스업,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개발업,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운영업,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통합서비스업,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한 가상컴퓨터시스템 제공업,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관련 정보제공업,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술용역서비스업, 통신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설계 및 개발업, 전자데이터 보안시스템 설계 및 개발업, 외부데이터 백업업, 원격접속에 의한 컴퓨터시스템 모니터링업, 웹 서버 대여업,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또는 정보의 데이터 전환업, 전자식 데이터 저장업, 컴퓨터 보안통합/네트워크보안/네트워크 아키텍쳐/암호화기술/컴퓨터보안분야에 대한 컴퓨터 상담업, 가상현실 분야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상담업, 인공지능 분야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상담업, 끝.

[별지 2]

선등록상표 1 내지 11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2007. 4. 4./2008. 6. 25./2018. 6. 25./서비스 표등록 제169420호

나 표장: 바르게 든든하게 쌍용건설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 또는 토지정보제공업, 건물관리업, 건물매매업, 건물분양업, 건물분양정보제공업, 건물임대업, 공동주택관리업, 공인중개사업, 공장임대업, 농장임대업, 대형할인점관리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련 정보제공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분양업, 부동산상담업, 부동산수타관리업, 부동산이대업, 부동산중개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취득대행업, 사무실임대업, 상가관리업, 상가분양업, 상가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시장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감정업, 주택관리업, 주택알선업, 주택중개업, 토지임대업, 편의점관리업

라. 등록권리자: A건설 주식회사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2006. 7. 13./2007. 8. 23./2017. 6. 8./서비 스표등록 제153550호

要家

나. 표 장: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시장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알선업, 주택중개업, 백화점관리업, 편의점관리업, 농장임대업, 건물분양정보제공업,

공동주택분양업, 콘도미니엄 분양업, 부동산분양업, 상업용건물 분양업, 사무실 분양업, 부동산관리정보 제공업

라. 등록권리자: A건설 주식회사

3. 선등록상표 3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2006. 7. 13./2007. 8. 23./2017. 6. 8./서비스 표등록 제153549호

나.표장: 쌍용 藝家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시장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알선업, 주택중개업, 백화점관리업, 편의점관리업, 농장임대업, 건물분양정보제공업, 공동주택분양업, 콘도미니엄 분양업, 부동산분양업, 상업용건물 분양업, 사무실 분양업, 부동산관리정보 제공업

라. 등록권리자: A건설 주식회사

4. 선등록상표 4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2002. 5. 20./2003. 10. 2./2013. 7. 3./서비스 표등록 제91423호

나. 표 장: Life Network APT - 쌍용 Sweet @ Home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임대업, 주택알선업, 건물분양정보

제공업, 부동산관리정보제공업

라. 등록권리자: A건설 주식회사

5. 선등록상표 5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2000. 9. 20./2002. 5. 9./2022. 5. 6./서비스 표등록 제75687호

Ssang yong PLATINUM

나. 표장: 상용 플래티넘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 대업, 주택관리업,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임대업, 주택알선업, 건물분양정보제공업, 부동산관리정보제공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사무용 건물건축업, 상업용건물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연립주택건설업, 오피스텔건축업, 주택건축업, 콘도미니엄건축업, 건축정보제공업, 택지공사업

라. 등록권리자: A건설 주식회사

6. 선등록상표 6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2001. 9. 22./2002. 3. 28./2012. 3. 28./ 서비 스표등록 제74692호

SSANG YONG SWEET.HOME

나.표장 쌍용스윗닷홈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임대업, 주택알선업, 건물분양정보제공업, 부동산관리정보제공업

라. 등록권리자: A건설 주식회사

7. 선등록상표 7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소멸일/등록번호: 2000. 1. 25./2001. 6. 14./2011. 6. 10./2021. 6. 15./서비스표등록 제68707호

The Preserve

gate community houses

나. 표 장: SSANGYONG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 대업, 주택관리업,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임대업, 주택알선업, 건물분양정보제공업, 부동 산관리정보제공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사무용 건물건축업, 상업용건물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연립주택건설업, 오피스텔건축업, 주택건축업, 콘도미니엄건축업, 건축정보제공업, 택지공사업

라. 등록권리자: A건설 주식회사

8. 선등록상표 8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소멸일/등록번호: 2000. 1. 29./2001. 4. 30./2011. 4. 27./2021. 5. 1./ 서비스표등록 제67775호

Ssangyong Science

나. 표장: 쌍용 사이언스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공동주택분양업, 부동산임대업, 콘도미니엄 분양업, 주택 알선업, 부동산 분양업, 상업용 건물 분양업, 주택관리업, 건물분양 정보 제공업, 사무실 분양업

라. 등록권리자: A건설 주식회사

9. 선등록상표 9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소멸일/등록번호: 1999. 12. 21./2001. 3. 3./2011. 3. 2./2021. 3. 4./ 서비스표등록 제66809호

나. 표 장: 쌍용인텔리전트아파트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 대업, 사무실임대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알선업, 주택중개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상업용건물건축업, 사무용건물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연립주택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주택건축업, 철골공사업, 콘도미니엄건축업, 철근콘크 리트공사업, 토지개발공사업

라. 등록권리자: A건설 주식회사

10. 선등록상표 10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1988. 12. 9./1990. 2. 9./2020. 1. 30./ 상표 등록 제188593호



나. 표 장: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솜, 향수, 일반화장수, 스킨로우션, 화장크리임, 퍼어머넌트용약, 조합향유, 선향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귀금속제 콤팩트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비귀금속제 콤팩트, 빗

라. 등록권리자: A제지 주식회사

11. 선등록상표 11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1988. 12. 9./1990. 2. 9./2020. 1. 30./ 상표 등록 제188591호

나. 표 장: **SANGYONG**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솜, 향수, 일반화장수, 스킨로우션, 화장크리임, 퍼어머넌트용약, 조합향유, 선향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귀금속제 콤팩트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비귀금속제 콤팩트, 빗
 - 라. 등록권리자: A제지 주식회사. 끝.

[별지 3]

선등록상표 12의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기념품판매알선업, 전자설비에관한매매알선업, 정보제공업,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판매알선업, 플랜트판매알선업,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경영고문업, 정보처리기술용역업, 건축자재판매대리점경영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부동산감정평가업, 빌딩및토지임대업, 무역대행업, 무역대리점경영업, 기업 경제/증권시장/자본시장에 대한 조사연구업, 기업신용조사업, 콘도미니엄관리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공장의 자동화설비업, 광산개발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산업기계기구설비에관한 용역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관광안내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체력단력장경영업, 골프장경영업, 수영장경영업, 컴퓨터학원경영업, 스키장 경영업, 전자제품에 관한 기술지도와 정보제공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호텔업, 컴퓨터상담업, 컴퓨터프로그램제작알선업,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대업, 로보트자동화시스템의개발업, 석유탐사업, 플랜트설계업, 조경공사업, 인쇄업, 토목및건축설계용역업, 환경영향조사업. 끝.

[별지 4]

선등록상표 13의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기념품판매알선업, 전자설비에관한매매알선업, 정보제공업,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판매알선업, 플랜트판매알선업,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경영고문업, 정보처리기술용역업, 건축자재판매대리점경영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부동산감정평가업, 빌딩및토지임대업, 무역대행업, 무역대 대리점경영업, 기업 경제/증권시장/자본시장에 대한 조사연구업, 기업신용조사업, 콘도미니엄관리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공장의 자동화설비업, 광산개발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산업기계기구설비에 관한 용역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관광안내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체력단력장경영업, 골프장경영업, 수영장경영업, 컴퓨터학원경영업, 스키장 경영업, 전자제품에 관한 기술지도와 정보제공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호텔업, 컴퓨터상담업, 컴퓨터프로그램제작알선업,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대업, 로보트자동화시스템의개발업, 석유탐사업, 플랜트설계업, 조경공사업, 인쇄업, 토목및건축설계용역업, 일반산업공장엔지니어링용역업. 끝.